

인천광역시 저수지·댐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4. 9. 2.(화)
기획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14. 07. 02.

나. 제안자 : 인천광역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14. 07. 02.

라. 상정일자 : 2014. 09. 02.(제218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)

- 제안설명 : 강태석 소방안전본부장
- 검토보고 :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왕동항
- 질의 및 토론
-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「저수지·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의 위임에 따라 인천광역시 저수지·댐 안전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,
- 저수지·댐의 효과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조례의 제정 목적과 위원회의 기능을 정함.(안 제1조 및 제2조)

-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위원의 임기를 정함.(안 제3조)
-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.(안 제4조 및 제5조)
-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, 위촉의 해제 및 위원회 간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.(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)
-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정함.(안 제9조 및 제10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상위법령인 「저수지·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서 시·도 저수지·댐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
- 인천광역시 저수지·댐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임.
- 안 제2조(기능)은 「저수지·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중앙저수지·댐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위원회의 심의·의결 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며 그 밖에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.
- 인천광역시의 저수지는 대부분 소규모, 농업기반시설로 그동안 「농어촌정비법」에 의하여 관리되고 동법 시행령에 따라 안전점검¹⁾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왔으며 현재 인천광역시의 저수지중 안전진단을 통하여 지정 고시된 재해위험저수지는 없음.

1) 일상점검은 분기별 1회, 정기점검은 영농기전 실시

- 다만, 본 제정 조례안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재해위험저수지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 시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견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< 신영은 위원 >

- 현재 재해위험 저수지는 없다고 하지만 사실상 점검해 보면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모름. 향후 안전점검 등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람.
→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음.

5. 토론요지

- 가. 찬 성 : 차준택, 유일용, 허 준, 신영은, 이영훈 위원
- 나. 반 대 : 없음

6. 심사결과

- 원안가결(재석위원 5명, 찬성 : 5명, 반대 : 0명)

7. 소수의견 요지

- 없음

8. 기타 사항

- 특이사항 없음

□ 붙임 : 인천광역시 저수지·댐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1부.

인천광역시 저수지·댐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저수지·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저수지·댐 안전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인천광역시 저수지·댐 안전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재해위험 저수지·댐 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사항
2. 저수지·댐의 안전관리 등 기술증진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저수지·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

제3조(구성 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소방안전본부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장의 위촉 또는 임명한다.

1. 재난·방재 분야 및 저수지·댐 업무 관련 공무원(과장급 이상)
2.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에서 댐공학·하천공학·환경공학·수리·수문학·토질공학 등 관련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
3. 그 밖에 저수지·댐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4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(운영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·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6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.

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.

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
제7조(위촉의 해제) 인천광역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.

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2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3.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

제8조(간사 및 서기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둔다.

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사무관이 되고, 서기는 업무 담당자가 된다.

제9조(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)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, 공공기관의 장,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, 의견의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10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